



Solvency II 도입 이후 유럽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정인영 연구원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2016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으로 위험을 보다 중시하는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 를 시행함.¹⁾

- EIOPA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2013년 10월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보고서 발표 등을 시작으로 약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Solvency II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함.²⁾
- Solvency II 는 유럽경제구역(EEA)에서 영업 중인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보험회사에 노출된 모든 유형의 리스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함으로써 소비자보호 강화, 보험회사 간 경쟁촉진, 감독방식 선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³⁾
 - 과거 Solvency I 의 경우 보험료와 준비금 지표만으로 보험회사 리스크를 산출함으로써, 개별 보험회사의 특성 차이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었음.

■ Solvency II 의 핵심은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요구자본의 이원화, 측정대상 리스크의 세분화임.

- 첫째, 평가시점에 예상 손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함.⁴⁾
 -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할인율로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EIOPA는 무위험이자율의 기간구조 산출방법, 가정, 추정결과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⁵⁾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임.
- 둘째, Solvency II 하에서는 요구자본을 최소요구자본(MCR: Minimum Capital Requirement)과

1) EIOPA(2016. 1. 4), "Solvency II is going live", 인터넷 홈페이지.
 2) 2016년 4월에 Solvency II 가 적용된 최초의 분기 재무제표가 감독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7년 5월에는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하에서의 평가결과가 담긴 연차보고서가 공시될 예정임.
 3) European Commission(2016. 1. 4), "Daily News: Commission welcomes entry into application of Solvency II Directive", 인터넷 홈페이지.
 4) 과거에는 상품판매시점에 사용한 최초 가정을 계속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원가법을 사용하였으나, Solvency II 하에서는 결산기에 계리적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등)과 시장 가정(할인율)을 현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함.
 5) <https://eiopa.europa.eu/regulation-supervision/insurance/solvency-ii-technical-information/risk-free-interest-rate-term-structures>.

지급능력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으로 이원화하여 규제를 차별화함.⁶⁾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최소요구자본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규제조치를 시행하며, 지급능력요구자본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본확충 등을 요구하게 됨.
- 셋째, 지급능력요구자본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를 시장, 건강, 신용, 생명, 손해, 무형자산, 운영리스크 등으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하위 리스크로 소분류하여 측정함.

■ 전문가들은 Solvency II 시행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의 상품구조, 자산배분, 경영 측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첫째, 상품구조 측면에서는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최저보증이율 인하, 장수리스크 헤지 확대 등이 예상됨.
 - 투자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비해 자기자본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투자성 보험상품 비중이 높은 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이 클 것임.
 - 감독당국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한 상품설계를 요구하고 있어 최저보증이율을 인하하거나, 요구자본이 작거나, 미래이익이 큰 상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⁷⁾
 - 리스크 세분화를 통해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장수스왑(longevity swap) 등을 활용한 장수리스크 헤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자산배분 측면에서는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 강화, 채권투자비중 확대 등이 예상됨.
 - 시장리스크가 지급여력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되어,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이 강화되고 부채변동성에 대응되는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셋째, 경영 측면에서는 내부모형 구축에 대한 수요 증가, M&A 가속화 등이 예견되고 있음.⁸⁾
 - 내부모형의 경우 표준모형에 비해 요구자본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내부모형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⁹⁾
 - 대형보험회사는 위험분산효과를 얻기 위해 상품다각화 전략을 취하고,¹⁰⁾ 중소형보험회사는 추가적 요구자본적립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음.¹¹⁾ **kiri**

6) 최소요구자본(MCR)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수준을 의미하며, 지급능력요구자본(SCR)은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을 0.5% 이내로 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함.

7) Munich Re(2014. 11. 27), "Analysts' Briefing", 인터넷 홈페이지.

8) Financial Times(2016. 1. 3), "Solvency II rules set to spark M&A surge in insurance sector", 인터넷 홈페이지.

9) 영국금융감독청(PRA)은 2015년 12월 Aviva, Prudential, RSA 등 영국의 19개 보험회사에 대해 내부모형을 승인함.

10) Solvency II하에서는 위험분산효과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다각화에 따른 요구자본량 감소효과가 있음.

11) Business Insurance(2016. 1. 3), "Long-awaited Solvency II rules launch in EU", 인터넷 홈페이지.